

서울특별시 마포구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

2015. 10. 27

북지도시위원회

1. 심사경과

가. 제안일자 및 제안자 : 2015. 10. 16. 마포구청장

나. 회부일자 : 2015. 10. 19.

다. 상정일자 : 제199회 임시회 제2차 위원회 (2015. 10. 27.)

상정, 심사, 의결

2. 제안설명요지

□ 제안설명자 : 주택과장 강 희 천

가. 제안이유

「주택법」 제52조 개정으로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의 심의·조정 사항에 「층간소음에 관한 사항」이 추가되고 의무관리대상에 포함된 주상복합 건축물도 분쟁조정 대상에 포함시켜 조례 일부를 개정하고자 함

나. 주요내용

- 1) 「주택법시행령」 제48조에 의무관리 공동주택의 범위에 주상복합 건축물의 주택 부분이 추가됨에 따라 주상복합건축물 150세대 이상 공동주택 부분을 적용 범위에 추가 (안2조)

- 2) 「주택법」 제52조에 공동주택의 층간소음에 관한 사항이 심의·조정 내용으로 추가됨에 따라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에서 「층간소음에 관한 사항」을 심의 할 수 있도록 기능 추가 (안3조)
- 3) 「주택법시행령」 제67조 개정으로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의 구성 일부 개정 (안4조)
- 4) 법제처의 「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」에 따른 용어 정비

3. 검토보고 (김용범 전문위원)

- 서울특별시 마포구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공동주택관리 분쟁 조정위원회 심의사항 및 구성 등에 관한 주택법 및 같은법 시행령의 개정내용을 우리 구 조례에 반영하고 분쟁조정위원회의 공정성 강화 등 운영상 미비점을 정비 보완하고자 조례 일부 개정하는 것으로 본 조례안의 주요개정내용을 보면 안 제2조에서 공동주택의 범위에 주상복합건축물의 주택 150세대 이상 공동주택 추가 부분 사항은 「주택법시행령」 제48조의 근거로 추가하였고 안 제3조에서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 심의 조정할 사항에 공동주택의 층간소음에 관한 사항을 법 제52조의 근거로 기능을 신설하였으며 안 제4조에서 분쟁조정위원회 구성시 기존 분쟁이 발생한 관리주체 및 입주자대표회의의 관여를 배제하고 일정자격을 갖춘 전문가들로 구성하여 공정하고 합리적인 분쟁조정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법 시행령 제67조에 따라 위원회 구성시 자격제한을 반영한 내용이며 제8조의5 위원의 해촉 조문을 신설하여 분쟁에 이해관계가 있거나 분쟁에 관여한 위원을 배제하여 공정성을 강화할 수 있도록 근거규정을 마련하였으며 따라서 본 조례개정안은 주택법 및 같

은법 시행령의 개정사항을 반영하고 기존 조례의 미비점을 보완하였으며 그 밖의 사항은 법제처의 「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」에 따라 조문과 용어를 어문규정에 맞게 수정하여 국민들에게 알기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정비한 것으로 판단됨.

이상의 검토내용을 종합하여 볼 때, 본 조례안의 개정 추진은 타당한 것으로 사료됨.

4. 질의 및 답변요지 : 생략

5. 토론요지 : 없음

6. 심사결과 : 원안가결

7. 기타 소수의견의 요지 : 없음

8. 기 타 : 없음